

한일 건설세미나 테마1

일본 건설업 허가 체계 및 건설산업의 발전동향

2016年3月29日

일반사단법인 해외건설협회
연구이사 小林 高明

Agenda

1. 건설산업의 개요와 현황
2. 건설업 허가제도의 체계
3. 건설산업의 과제와 향후 동향
4. 건설산업의 해외 전개

건설산업의 역할과 과제

건설산업의 역할

건설산업은 **지역의 인프라 정비와 메이트너스 등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경제와 고용을 유지하고 재해 시에는 **최전방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지역의 수호자로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재해 긴급대응】

○2007년3월 동일본대지진
지진 직후부터 현지의 건설업체가 피난소의 긴급 내진진단 등을 실시. 발생 당일에 피해 도로 처리, 구호 루트 개통작업 개시.



작업 후



【인프라유지보수의 필요성】

▶사회자본의 노후화에 따른 피해



【미시시피강 고속도로 다리 낙하사고
(2007년 미국 미네소타주)】



【지방의 다리붕괴 (2007년 가가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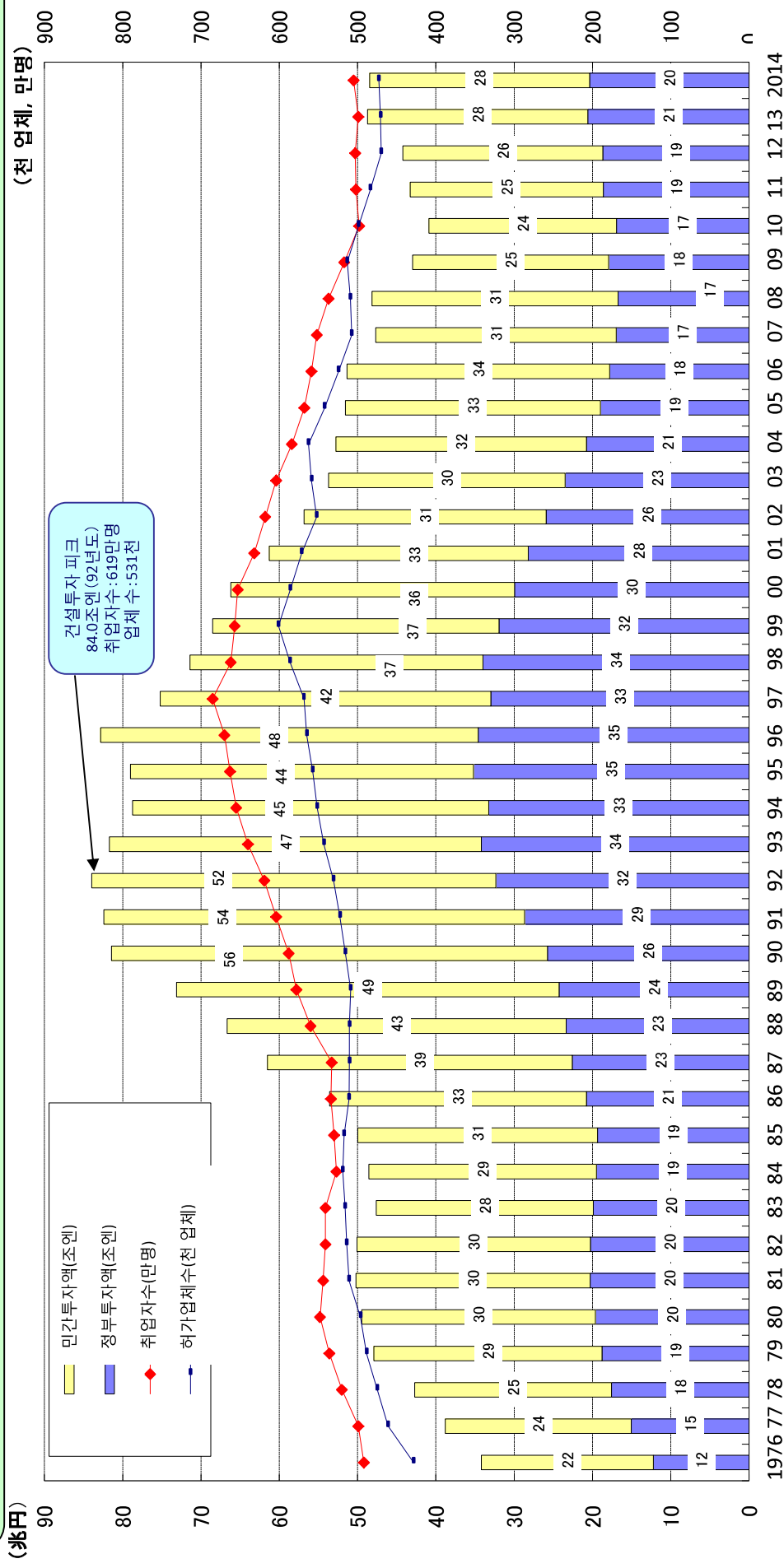
현재 건설산업의 주변 환경

최근 건설투자의 급격한 감소와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의 경영을 둘러싼 환경 악화와 현장 기능노동자의 감소, 청년 노동자의 감소와 같은 구조적인 과제에 직면.

증장기적인 인프라 품질확보 등을 위해 국토·지역 건설의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의 구축이 과제.

건설투자, 허가업체 수 및 취업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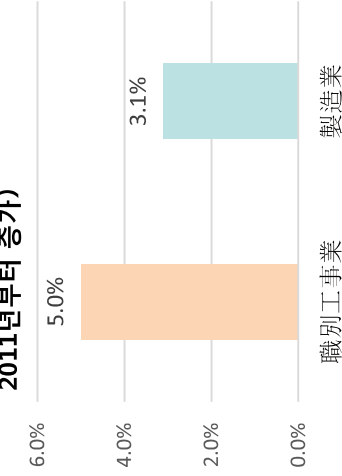
- 건설투자액은 피크(1992년도) 시의 약84조엔에서 2010년도에는 약41조엔으로 감소했으나 그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도에는 약48조엔(피크 시의 약42%감소)。
- 건설업체 수(2014년도 말)는 약47만개 사로, 피크 시(1999년도 말) 대비 약21% 감소。
- 건설업 취업자 수(2014년 평균)는 505만명으로, 피크 시(1997년 평균) 대비 약 2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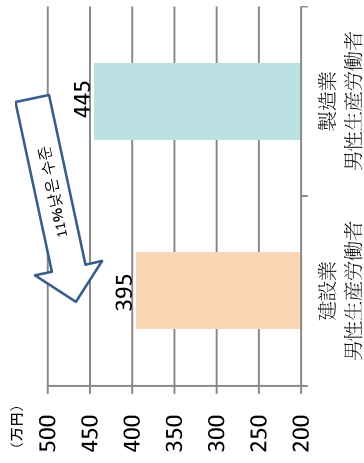
건설기능인력의 현황

○ 건설기능인력의 임금현황은 제조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①). 기능인력수는 증가세가 계속(②).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연령 구성에 개선의 조짐이 보임(③). 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장래 건설투자 금액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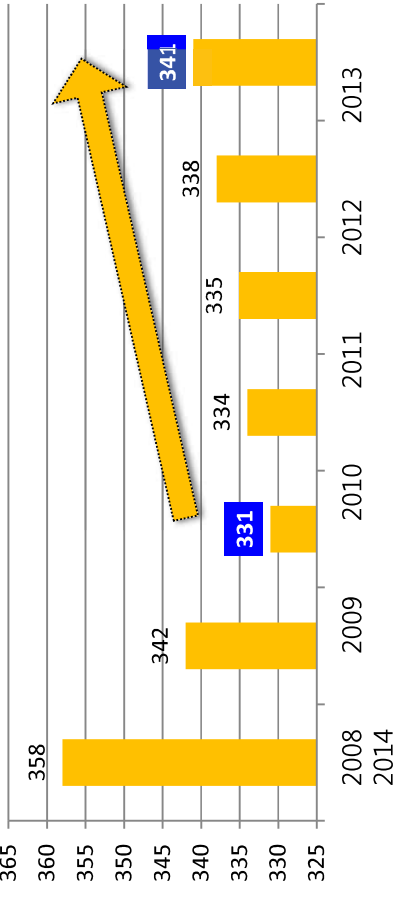
① 연간급여의 증가 (2014년, 2011년부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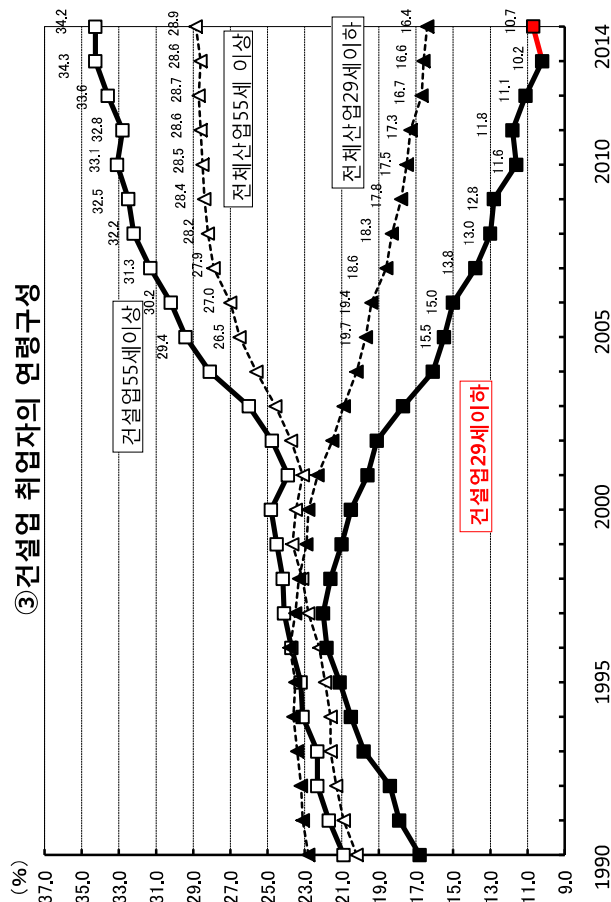
현장종사자의 연수입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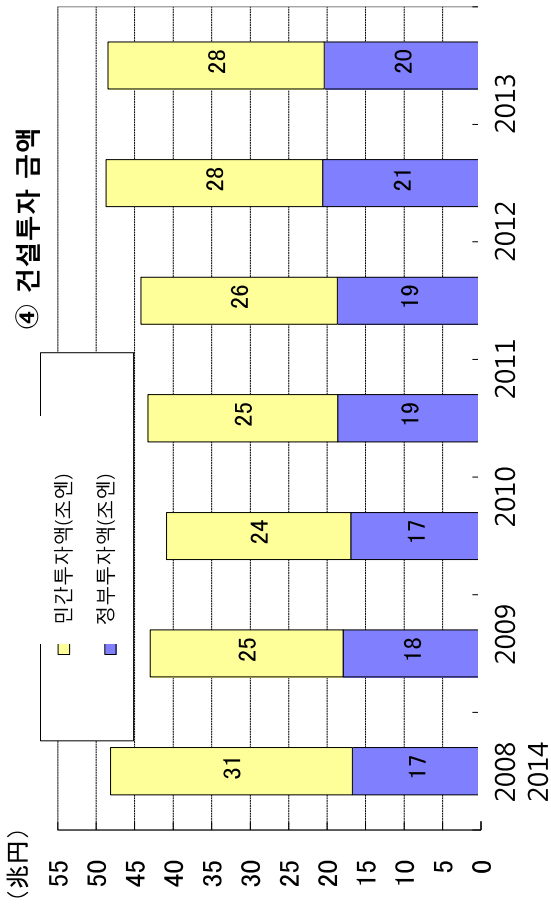
② 건설기능인력 수



③ 건설업 취업자의 연령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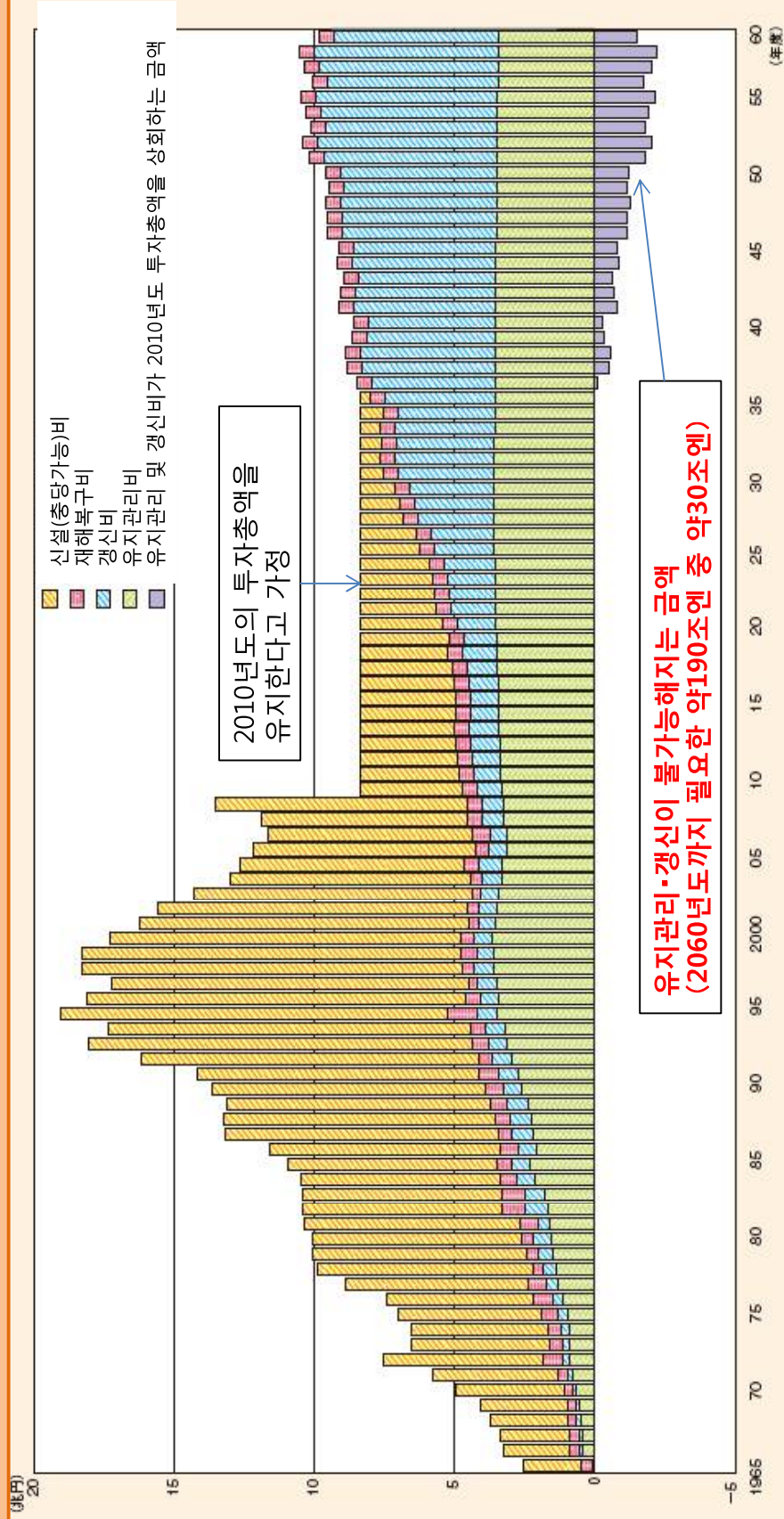
④ 건설투자 금액



향후 유지관리·갱신투자의 증대

- 향후 유지관리·갱신비가 증대하고 신설비의 대폭 감소가 예상.

<인프라(도로, 항만, 공항, 공공주택, 하수도, 도시공원, 치수, 해안)의 유지관리 갱신비 추계>



Agenda

1. 건설산업의 개요와 현황
2. 건설업 허가제도의 체계
3. 건설산업의 과제와 향후 동향
4. 건설산업의 해외전개

건설업법 제정 (1949년)

배경

- 건설업은 국민공공의 복지와 개인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공공시설과 가옥 등의 공작물을 생산
 - 공사 시공의 품질이 사회공공의 복지와 직결
- 건설업은 2차 대전 이후 국민경제의 재건을 위해 중요한 책무
- 2차 대전 이후의 복구 경기의 급속한 증식 (1947년)
 - 건설업자의 치열한 경쟁 발생
 -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부당하게 낮은 도급가격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 곳곳에 혼란과 폐해

목적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확보와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에 기여
= **건설업법 제정**

개요

- 등록제도의 창설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이에 대한 건설장관(大臣)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원칙(도급 계약의 내용, 일괄 하도급 금지 등)
- 기술자 배치(공시현장에 주임 기술자를 배치할 것 및 건설대신등록 건설업자는 영업소에 일정한 기술자를 둘 것을 의무화)
- 감독처분(권고, 지시,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

한국

건설업법 1971년 개정

배경

- 일본의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 건설투자 수요의 증대, 건설업의 중요성 고조
그러나,
○ 시공능력, 자금력, 신용에 문제가 있는 건설업자가 다수
여기에,
○ 환경의 변화(기술혁신, 건설노동력 부족, 자본의 자유화 등)

건설업의 근대화, 합리화 요청

개요

- 건설업에 허가제도 도입 (등록제도를 대신하여 업종별 허가제도를 도입)
- 특정건설업 허가제도 도입(하도급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을 하도급에 맡기는 건설업자에 특정건설업의 허가를 의무화)
- 도급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규정 정비 (도급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부당하게 낮은 도급대금 금지 등)
- 하도급자 보호규정(하도급대금의 지불기간, 특정건설업자에 대한 대리지불 등의 권고)
- 그 외 감독처분, 벌칙강화 등

건설업법의 개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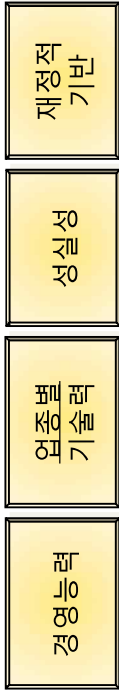
-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질향상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적정화 등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발주자를 보호
-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 촉진

허가제도 ★건설업자의 자질 향상★

허가의 요건



결격요건

- 허가 취소로부터 5년 미만인 자
- 형 처분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자
-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5년 미만인 자 등

28 업종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등)

허가의 종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등)

특정건설업 허가

(원도급자로서 3,000만원
이상의 하청계약을 맺은 공사)

일반 건설업 허가

(특정 건설업 이외)

국토교통 장관(大臣) 허가

2개 이상
도도부현
에 영업소
를 설치

도도부현 지사허가

하나의
도도부현
에만
영업소
설치

허가불요

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건축일식공사에
대해서는 1500만원
미만 또는 150㎡
미만의
목조주택공사)

기술자제도 ★시공기술의 확보★

업종별로 공사현장에 기술자 배치

주임기술자 배치

감리기술자 배치
(원도급자로부터 3,000만원 이상의
하도급계약을 맺는 경우)

경영사항심사★공공공사원도급자의 일원적 평가★

경영상황 등에 관한 객관적 사항의 심사
(공공공사의 원청에 되는 건설업자)

- ①경영상황 ②경영규모
- ③기술력 ④사회성

도급계약의 적정화★발주자와 하도급자의 보호★

- 원도급자의 의무
 - 공정한 도급계약 체결의무
 - 도급계약의 서면체결의무

예: 시공체제대장 작성 (3,000만원
이상의 하청계약을 맺는 경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하청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전부 (입계법(입찰계약경화법)에서 별도규정)

감독처분 ★법령준수 실효성 담보★

※ 허가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처분가능

- 지시처분 · 영업정지처분 · 허가취소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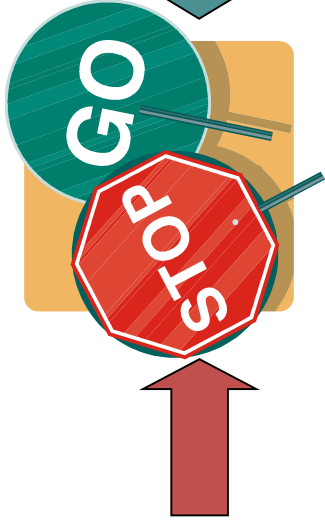
건설업 허가제도를 도입한 이유

건설생산물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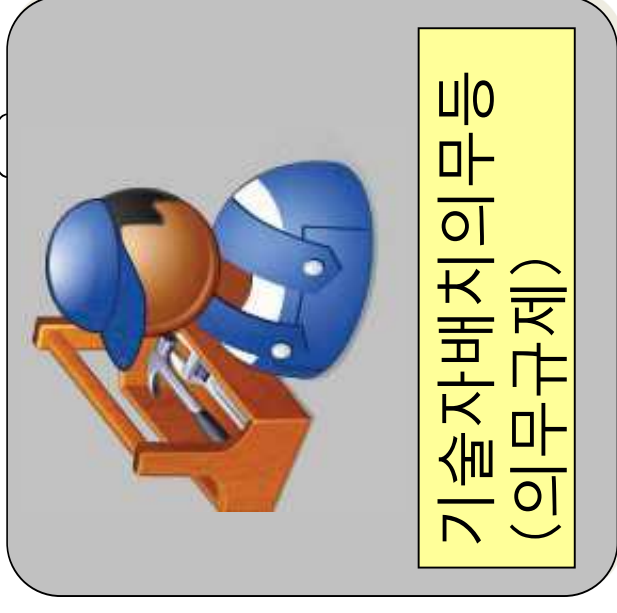
- 물품마다 주문생산=미리 품질을 확인할 수 없다
- 부적절한 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복구하기 어려움
- 장기간, 불특정다수가 시공에 관여(하도급이 대부분 중층적) 등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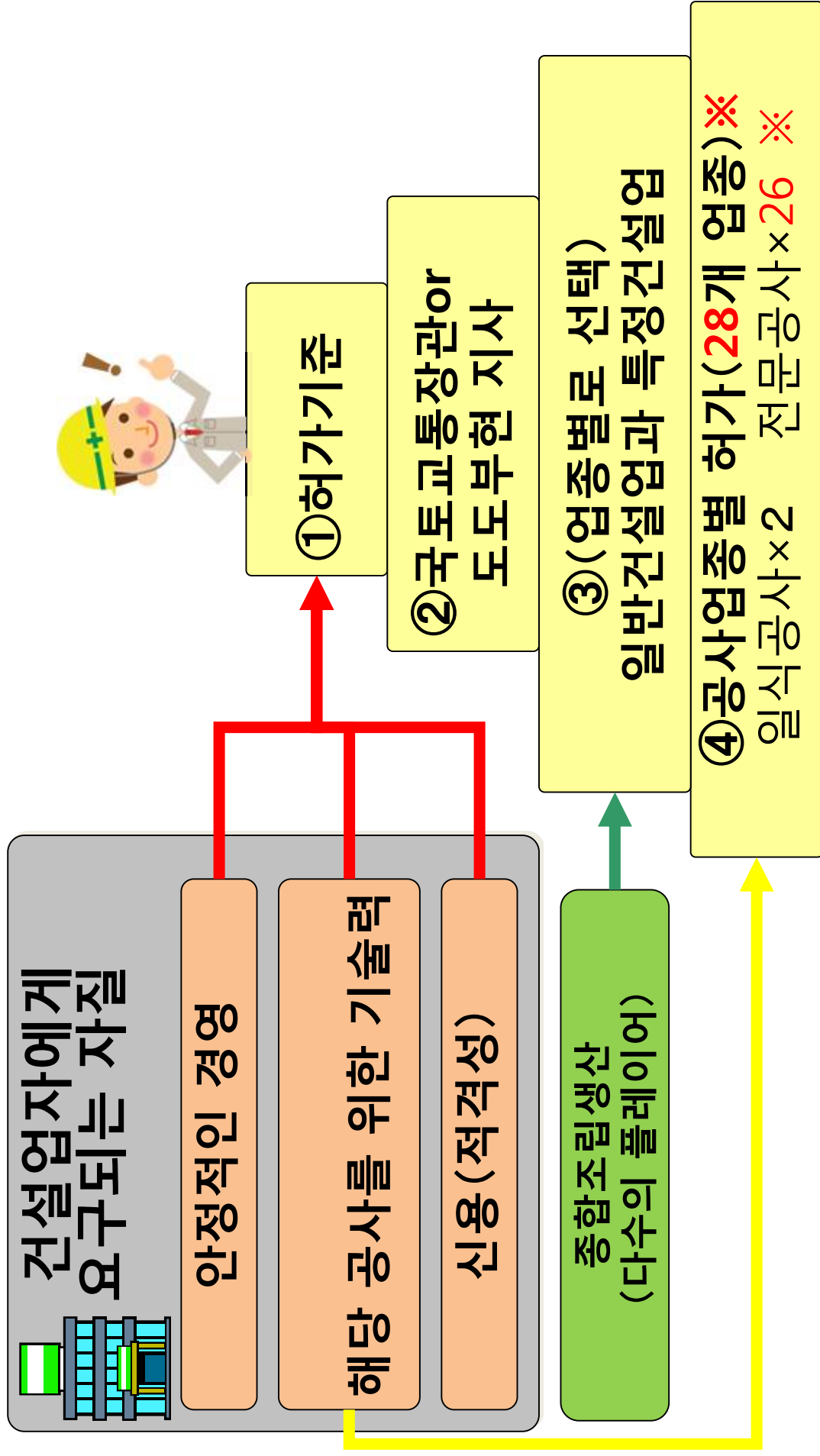
건설업의 허가제도
(진입규제)



10

2016 한원건설세미나 (3.29)

건설업 허가제도



※ 2014년 법개정에 따라 2015년6월 이후 29개 업종(전문공사 27개 업종)으로 변경¹¹

특색①『허가가 필요한 범위』

경미한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맡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

『건축일식공사』

- 도급대금액(세금포함)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50㎡미만의 목조주택공사

『건축일식공사』이외의 27개 업종

도급대금액(세금포함)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



→ **상기이상의 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자는 허가 필요 !**

① 국토교통장관(大臣)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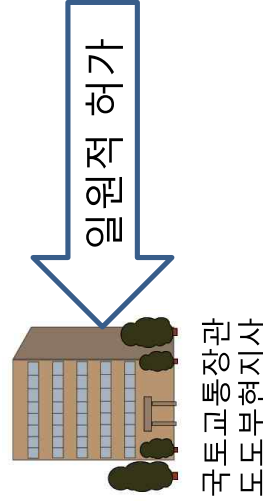
2개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 건설업 영업소를 두는 경우

또는

②도도부현지사 허가(건설업 소관 부서)

하나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만 건설업 영업소를 두는 경우

★공사업종에 상관없이 허가는 건설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일원적으로 한다



★장관의 허가,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 중 하나가 있으면 공사의
시공장소는
전국 어디라도 가능



○특정건설업 허가...대규모 공사의 원도급자를 상정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1건의 건설공사 중,
3,000만원 이상의 하청계약을 하는 경우
(건축공사업에 대해서는 4,500만원 이상)

※특정건설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규칙

- 허가기준의 강화 : 영업소에 배치하는 기술자의 요건과 재산 기초 요건
- 하도급대금 지불기일의 규제(50일)과 지연이자
- 하도급대금 지불방법의 제한(할인이 어려운 어음교부 금지)
- 하도급업자의 임금미지불 등과 같은 경우 대리지불 등
- 시공체제대장, 시공체계도 작성 등
- 하도급업자 지도, 위반시정, 허가행정청에 대한 신고
- 공사현장에 감리기술자 배치 등

○일반건설업 허가...그 외(경미한 공사를 제외)

※일반건설업 또는 특정건설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계약금액의 상한은 없다¹⁴

특색④『공사 종류에 따른 28개 업종별 허가』

·건설공사를 내용 별로 28개 업종으로 구분 ⇒『28개 업종별 허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의 2종류의
일식공사업 (복수의 전문공사가
조합된 공사나 종합적인 메니지먼트)

○목공사업, 미장공사업 등 26개
업종의 전문공사업 ※

토목일식공사	유리공사
건축일식공사	도장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내장마감공사
비계·토공·콘크리트 공사	기계기구설치공사
석공사	열절연공사
지붕공사	전기통신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관공사	착정공사
타일·벽돌·블록 공사	창호공사
강구조물공사	수도설비공사
철근공사	수방시설공사
포장공사	청소시설공사
조선품공사	해체공사(※)
판금공사	

※ 2014년 법개정에 따라 2015년6월 이후, 해체공사가 추가된 29개 업종으로.

허가기준 = 3개의 Group

1. 경영안정성 Group

(기준①『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기준)

경영진에는 1명 이상의 경영경험자 배치 의무화

(기준②『재정적 기반·금전적 신용』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상태일 것

2. 기술력 Group

(기준③『영업소 전임기술자』기준)

영업소에 전임 기술자 배치 의무화

3. 적격성 Group

(기준④『적격성』기준)

법령위반자 등의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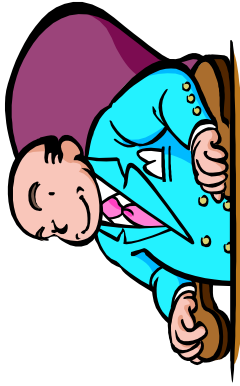
(기준⑤『결격』기준)

폭력단 등의 배제

○ 허가 취소 사유

기준①『경영업무 관리책임자』구체적 기준

일반 · 특정건설업 공통 요건



법인(상근 임원)
개인(개인 또는 지배인) 중에
(경영업무 담당)

건설업의
경영업무에 관해
책임있는
임장에서 일정
이상의 경험을
가지 자

가 있어야 함

필요 경험기간에는 공사계약에서 인도, 보수에 이르는 업무를
경험하기 위한 기간 등을 반영해 5년간을 기준으로 설정.

기준②『재정적기반』구체적 기준

○일반건설업=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가 자기자본 금액이 500만엔 이상일 것

나 500만엔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다 허가신청 직전 과거 5년간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영업 한 실적이 있을 것

○특정건설업=다음의 모두에 해당되어야 함.

가 결손 금액이 자본금 금액의 20%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유동비율이 75% 이상일 것

다 자본금액이 2,000만엔 이상이며 자기자본 금액이 4,000만엔 이상일 것

기준③ 『영업소 전임기술자』 구체적 기준

기술력 Group



『영업소 전임기술자』 기준

건설업 영업소에 이하의 자를 배치

(Point①)

해당 영업소에 상근하며 전직
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는 자일 것

(Point②)

일정 기술요건을 가진 자일 것

일반건설업

가 1급, 2급 국가자격자
나 일정 이상의 실무 경험자
①대졸 (지정학과) 3년 이상
②고졸 (지정학과) 5년 이상
③상기 이외 10년 이상
다 국토교통부장관인정자

특정건설업

가 1급 국가자격자
나 일반 건설업 기술요건을 충족하고
2년 이상의 지도감독 실무경험
(4,500만 이상의 공사)이 있는자
(지정건설업 이외)
다 국토교통부장관인정자

19

기준④『성실성』구체적 기준

일반 · 특정건설업 공통 요건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개인, 법인, 지점장, 영업소장 등이
도급계약에 관해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자가 아닐 것.

‘도급계약에 관해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자’란,

관련법령위반자(악질)

건축사법, 택지건물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하여 면허 등의 취소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준⑤『결격』구체적 기준

일반 · 특정건설업 공통 요건

·허가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가 있거나 또는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빠져 있을 때

·기업 자신이나 그 임원, 지점장, 영업소장 등에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 미만인 자 및 폭력단원 등이 그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개정에 따라 2015년4월부터 추가

·허가 취소처분(악질적 행위에 기반한 것에 한정)을 받고 5년 미만인 자

·영업정지(금지) 기간 중인 자

·기업자신이나 그 임원, 지점장, 영업소장 등에 다음의 법률 벌금형에 처해져 형 집행이 끝났거나 또는 형을 받지 않게 된 지 5년 미만인 자

- 건설업법,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 노동기준법 등
- 폭력단 대책법, 형법의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

·임원, 지점장, 영업소장 등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형 집행이 끝나, 형을 받지 않게 된 지 5년 미만인 자가 있는 자

Agenda

1. 건설산업의 개요와 현황
2. 건설업 허가제도의 체계
3. 건설산업의 과제와 향후의 동향
4. 건설산업의 해외 전개

최근 건설산업의 상황과 과제

건설기업의 경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 국내의 경쟁 격화
- 국내 건설투자의 급격한 감소
- 해외에서의 막대한 인프라 수요

건설기업의 구조적 문제

- 현장 기술노동자의 감소
- 건설업 취업자의 고령화와 청년 노동자의 감소
- 뛰어난 기술, 노하우 활용의 장이 감소

건설산업의 사회적 중요성

- 재해시의 긴급대응, 복구
- 지역의 인프라 정비, 유지보수
- 일본산업 전체의 버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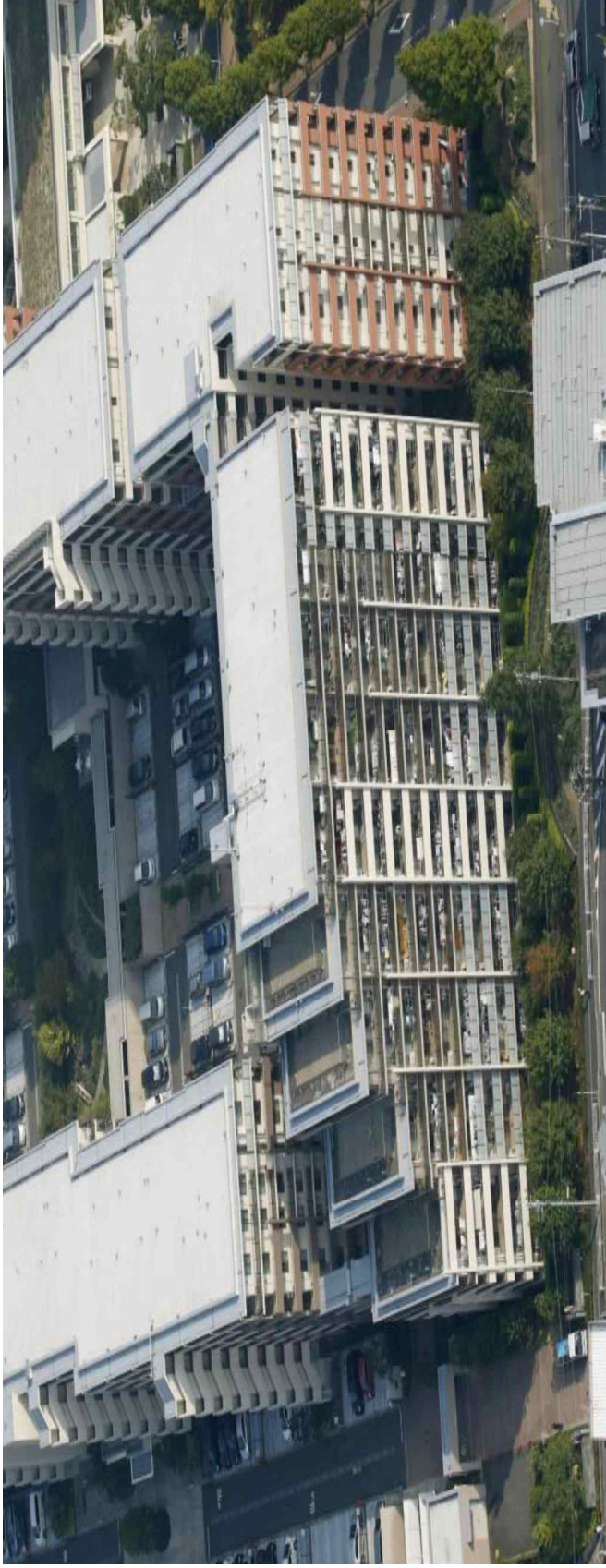
1. 중장기적인 인프라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 국토·지역 조성의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의 구축이 과제.
2. 해외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통한 일본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과제.

동일본대지진 후의 복구 수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한 건설 수요를 거치고 난 이후에 중장기적인 국내건설투자는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 인재확보를 위한 대응

기능인력의 처우개선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	청년, 여성의 진입 촉진
➢ 적절한 임금수준 확보 ○ 공공공사 설계 노무단가의 적절한 설정 ➢ 사회보험 등 미가입대책의 강화 ➡ 모두 기능인력에게 있어 절실한 문제	➢ 공공공사의 발주자가 적산금액을 부담하게 낮추는 행위 근절 ➢ 덤핑대책 강화 ○ 저임찰가격 조사제도 등의 도입·활용 철저 (미도입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요청) ➡ 기능인력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험값 수수 방지	➢ 청년과 여성의 활약 추진 ○ 우수한 젊은이에게 기술 검정 수험자격을 조기에 부여 ○ 여성 인력 확보를 위한 행동계획 실천(5년 내에 여성 인력 두 배 증가) ➢ 장래를 내다 본 환경 정비 ○ 건설사업의 안정적·지속적인 전망 ➢ 교육훈련의 확충 강화
건설생산 시스템의 간소화· 효율화· 고도화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공확보 대책	
➢ 현장의 간소화·효율화 [신기술·신공법 개발, 적절한 공기·공정 확보 등] ➢ 중층하도급구조의 개선 [적정한 원/하도급 촉진 등] ➡ 민간설비투자를 포함, 건설투자가 원활하게 실시되는 환경 정비	➢ 예정가격의 적절한 설정 [최신 단가적용 철저, 각종 슬라이드조항 활용 철저] ➢ 인재의 효율적 활용·평준화 [발주전망의 통합·공표, 시공시기의 평준화]	

Defective Piling Work of 'Tilting Condominium Case' in Yokohama City (2015)



(Photo: The Japan Times)

THE JAPAN TIMES Headlines:

“Sinking condo in Yokohama blamed on negligence by pile-driver worker” Oct 17, 2015

“Piling scandal needs deep probe” Nov 11, 2015

“Japanese piling industry leader unveils data manipulation” Nov 26, 2015

“Japan land ministry to punish three firms over Yokohama tilting condo: sources”
Jan 7, 2016

향후 건설산업정책의 방향성

중앙건설업심의회 (국토교통성에 설치된 심의기관)에서 심의중

2016년1월에 심의 개시, 6월까지 중간 보고, 그 후 필요한 제도 개정 예정

건설산업을 둘러싼 정세

- **건설시장의 양적·질적인 변화**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Maintenance, Reform의 증가)
- **고령자의 대량 이직과 인재획득경쟁의 격화**
- **지역 수호 역할의 증대, 지자체의 공사발주능력 저하**
- **지역 건설기업의 경영상의 과제, 다양한 건설기업의 존재**

중앙건설업 심의회에서 제시한 '주요 검토과제의 예'

- 건설생산시스템의 적정화·효율화
원·하도급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중층구조'의 개선
민간공사에서의 관계자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 건설업을 유지하는 기술자와 노동자 인재의 확보·육성
기능인력의 경험에 축적되는 시스템 도입
공사현장의 주5일제 등 직장환경의 개선
- 건설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는 환경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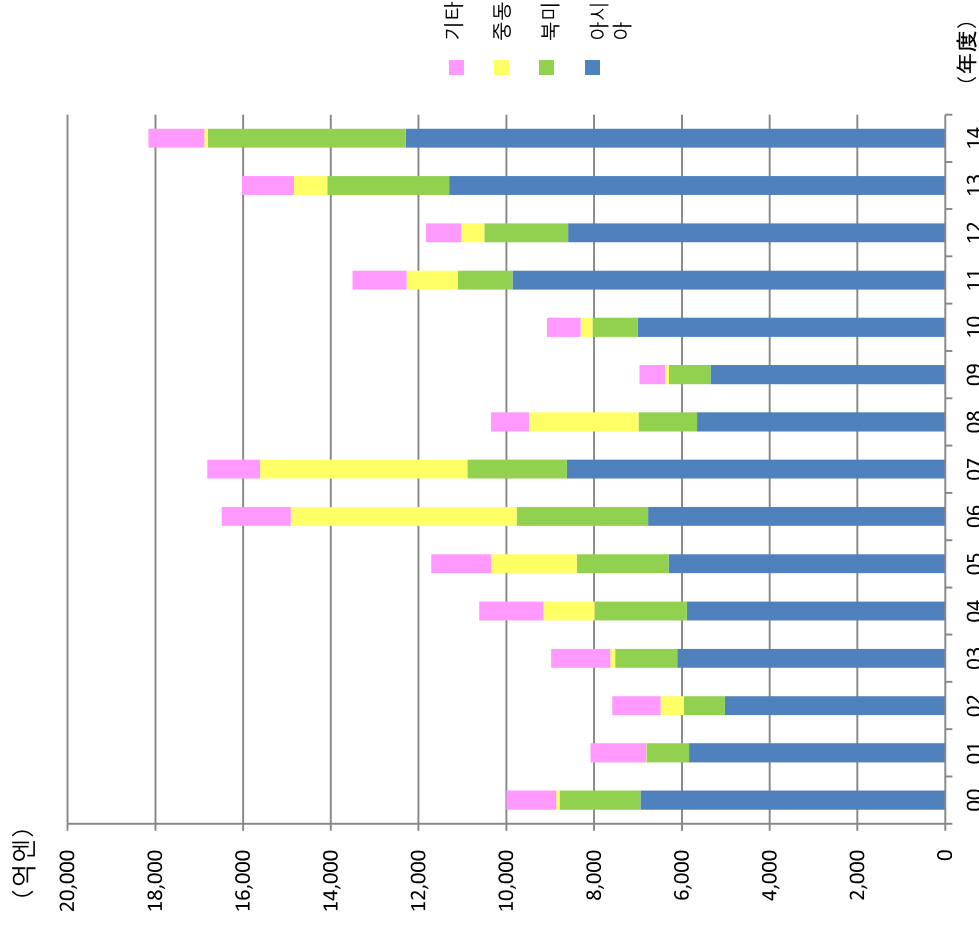
지역 건설기업의 소규모화, 후계자 문제

Agenda

1. 건설산업의 개요와 현황
2. 건설업 허가제도의 체계
3. 건설산업의 과제와 향후 동향
4. 건설산업의 해외 전개

건설산업의 해외전개 상황

일본건설기업의 해외수주실적 추이



'2020년까지 연간 수주 약 2조엔 이상' 이 정부 목표

국가·지역별 수주실적 (2014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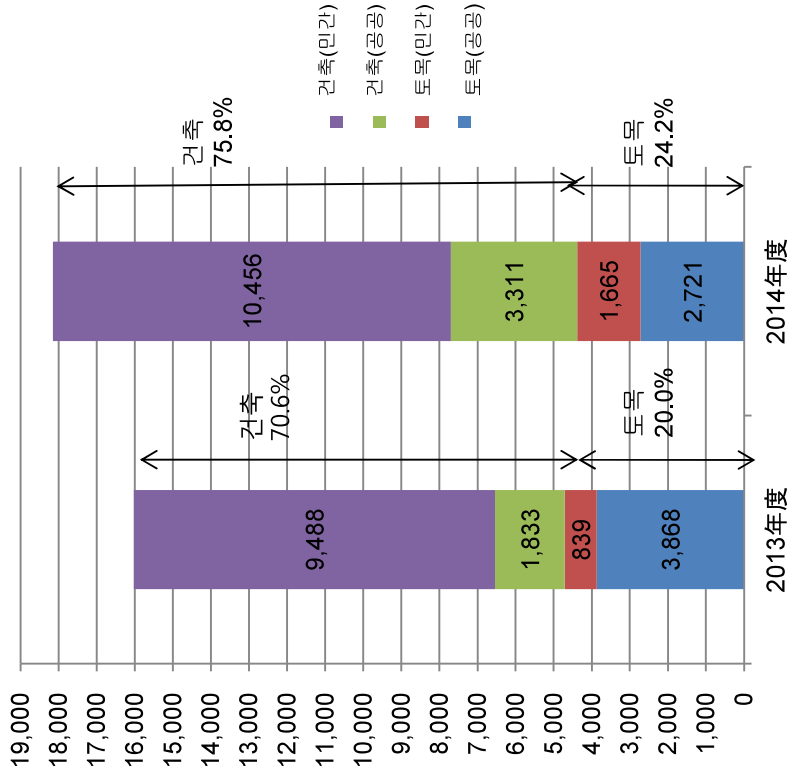
국가·지역명	금액 (억엔)
싱가폴	4,996
미국	4,279
태국	1,395
말레이시아	1,054
베트남	986
인도네시아	943
홍콩	717
중국	620
대만	473
멕시코	371
그 외 53개국	2,320
합계 (63개국)	18,153

2014년도 해외공사수주실적의 내역 · 주요 수주안전

- 2014년도는 전년도 대비 공공·민간 모두 건축공사의 수주가 대폭 증가. 마찬가지로 민간 토목공사도 증가.
- 주요 대형수주 안전은 토목공사에서는 공항공사에서는 복합공사는 병합시설 공사가 많다.

해외건설수주실적의 내역

2013년도 및 2014년도
(억엔)



2014년도 해외수주안전 (수주액 상위 10건)

순번	나라명	안전	토목·건축 종류별	계약금액 (백만엔)
1	싱가폴	병원공사	건축	95,900
2	싱가폴	공항시설공사	토목	76,200
3	싱가폴	병원공사	건축	55,031
4	미국	복합시설공사	건축	43,189
5	미국	복합시설공사	건축	36,760
6	홍콩	해저터널공사	토목	33,832
7	싱가폴	공항복합시설공사	건축	33,743
8	싱가폴	오피스빌딩공사	건축	28,000
9	미국	공익시설공사	건축	26,701
10	말레이시아	발전소공사	토목	22,723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 (2015년 5월 발표)

- 일본은 네 개의 축으로 구성된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을 통해 각국·국제기구와 협동하여 '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추진
- 이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 ADB(아시아개발은행)과 연계하여 향후 5년 동안 총래의 약 30%증가한 약 1,100억달러의 '질 높은 인프라투자'를 아시아 지역에 제공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4가지 축

- 첫째: 일본의 경제협력 톨을 총동원한 지원 규모의 확대·신속화
- 둘째: 일본과 ADB의 협력
- 셋째: JBIC(국제협력은행)의 기능 강화를 통한 리스크 머니 공급을 배로 늘림
- 넷째: '질 높은 인프라 투자'가 국제적 스탠다드로 정착
세계은행, ADB 등의 국제기구와 많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동하여 '질 높은 인프라 투자'에 관한 세미나 개최



G7 Summit(2016년 5월 일본 이세시마 개최)에서도 의제 중 하나가 될 예정

